서울특별시

계획 415_　　　　　　70. 10. 31

수신 건설국장

참조 관리제2과장

제목 서울 도시계획 하천 일부변경 (성북천 복개)

1. 관리 419_1023호(70.3.12)의 관련입니다.

2. 성북천 도시계획 변경요청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하여 건설부 고시 제425호(70.9.1)로 고시되었기 통보하오니 업무수행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가. 녹지는 복개와 동시에 조성할것.

나. 주위여건을 고려하여 옥내 통로등을 설치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것.

다. 하상을 바닥 콘크리트 포장하여 하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것

라. 건축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할것.

3. 관리 419.13_10434(68.11.14)로 귀국에서 도시계획 변경 의뢰하여 69.1.21. 건설부 고시 제61호로 서울도시계획 하천(성북천) 일부 변경고시되어 귀국에서 공작물 설치허가 한바 있는 본하천 하류에 대하여서도 본건 복개로 확보되는 25미터 간선도로가 청계로(광로 2_2)까지 계속연장 되도록 기고시 사항에 대하여 변경 고시를 받은후 변경허가 조치하여 청계로 까지 25미터 간선 가로 확보에 지장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

첨부.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　끝.

지방행정사무관

도시계획국장

0074

서울기록원

건설부 고시 제425호

서울 도시계획 하천 일부를 (성북천 복개)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서울시청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0. 9. 1.

건설부장관

가. 하천 변경조서

구분	계획	폭원	연장	면적	기점	종점	비고
기정	개거	22 m – 26 m	1,444 m	34,656 m²	동선동 2가 1번지 앞	안암동 4가 41–38 앞	복개후상가 건립면적 13,237 m² 녹지면적 4,390 m²
변경	복개	"	"	"	"	"	

서울기록원

나. 가로 결정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면적	기점	종점	비고
계획	대로	3		25 m	1,444 m	36,100 m²	동선동2가 1번지앞	안암동4가 41–37 앞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생략)

다. 녹지 신설조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녹지	성북천 복개상	4,390 m²	3개소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생략) 끝.

성북천 현황도

S=1: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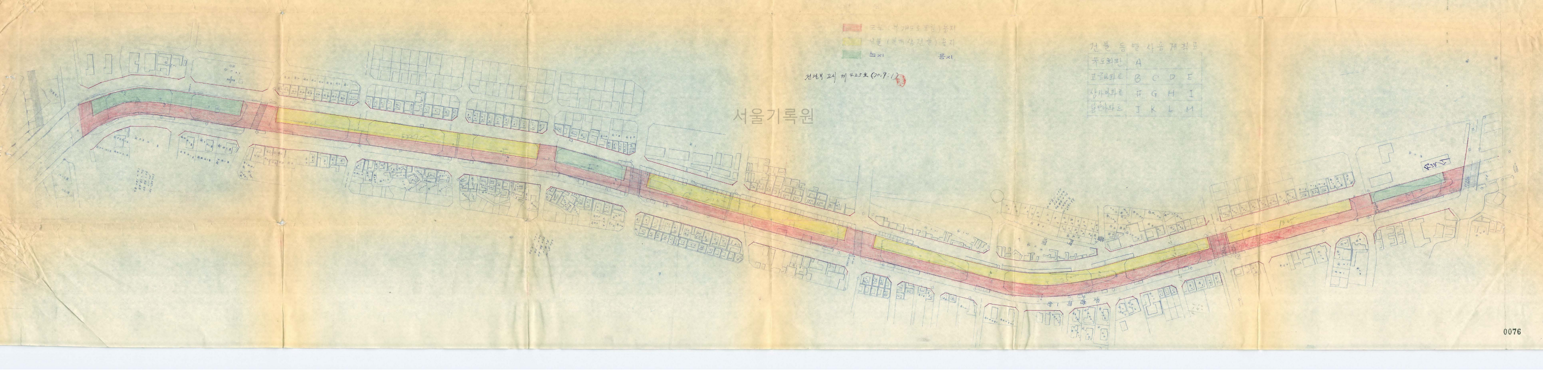

🟥 도로(복개도로 포함)용지

🟨 건물(복개상건물)용지

🟩 녹지 용지

건설부 고시 제425호 (70.9.1)

건물 동별 사용계획표

유도회관	A			
고급아파트	B	C	D	E
상가아파트	F	G	H	I
일반아파트	J	K	L	M

서울기록원